

『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』 기업 Value Up 프로젝트(R&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) 지원기업 모집 공고

조선대학교,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『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』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기업 Value Up 프로젝트(R&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)에 참여할 지원기업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0일

조선대학교총장,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장,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

1

사업개요

사업 목적

- PBV(Purpose Built Vehicle, 목적기반자동차)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완성차 기술협력 네트워크 및 부품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산학연 R&D 생태계 구축
- PBV 부품기업과 완성차 기업 간 기술 요구사항 매칭 및 공동 개발 기회 발굴과 완성차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

※ PBV : 탑승객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근거리 화물운송 등 친환경 이동 솔루션

지원 대상 : 지역 내 목적기반모빌리티(PBV) 전후방 부품기업

※ 본 사업은 R&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관련 사업으로 PBV 공동협업센터 인프라 (PBV 레이저 절단·접합 시스템 등) 활용 기업에 대해 우대함

지원 범위 : 내연기관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종에서 0.5톤 ~ 2.5톤 적재량의 (픽업)트럭, SUV, RV, 미니버스 및 해당 차량에 포함되는 부품

지원 형태 : 지원사업별 직·간접 지원

사업 기간 : 협약일(8월) ~ 11월말

※ 사업 기간은 선정평가 및 협약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

지원 세부 내용

지원 세부 내용

구 분	지원형태 및 지원금	지원 건수	비고
PBV (부품 모듈) 시제작 지원	<p>▶ 수요기반 PBV (부품 모듈) 시제작 개발 지원 (기업당 최대 20백만원~30백만원 내외,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)</p> <p>※ 총 사업비 10% 기업부담금 발생 및 부가세 미포함 (부가세 기업부담)</p>	3건	발표평가
시험평가 지원	<p>▶ PBV 관련 개발 시제작 차량 및 모듈·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(기업당 최대 2백만원 내외)</p> <p>※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장비 활용 우선</p> <p>※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지원 시, 총 사업비 10% 기업부담금 발생 및 부가세 미포함(부가세 기업부담)</p>	3건	서면평가
해외수요처 발굴 국제 교류	<p>▶ 차량·부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수요처 발굴·비즈니스 교류 지원 (기업당 최대 2백만원 내외)</p> <p>※ 국외전시회 참가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체재비(항공· 숙박·식대 등) 80% 지원(20% 기업부담금 발생)</p> <p>※ 기업 당 지원금액은 전시회 참가 현황에 따라 변동가능</p>	2건	서면평가, 전시회참가 기업대상

※ 상기 지원 프로그램은 PBV 관련 부품기업에 한하며 위 지원 세부 내용에 대해 중복지원 가능

※ 각 프로그램 별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※ 지원사업 별 기간, 지원건수, 금액은 별도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
※ 기업부담금은 각 프로그램마다 상이함(총 소요비용의 부가세 또는 초과 비용은 수혜기업 자부담)

※ 접수기간 종료 후 미달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시접수 예정

※ 과제 수행 시 선정기업 대상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·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전문가 컨설팅 진행

신청자격(공통)

-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둔 기업으로 자동차 관련 연관 기업

 신청제외 대상

-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,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(각종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중인 경우
 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 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 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 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 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자본전액잠식(창업 3년 이내 제외), 부채 1,000%(연 속 2년) 이상인 경우
- 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을 취함

4

사업 진행 절차



※ 신청서 접수 전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
※ 단, 특수성이나 사업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전 선정기업에 지원금 지급은 가능하나,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5

평가 방법

평가방법 : 자격심사 및 발표평가

-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(또는 서면평가) 진행
-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(평가위원회)를 통한 발표평가

선정기준 : 지원의 적합성 및 계획타당성, 기술경쟁력, 사업성,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

□ 평가 기준표

항 목	세 부 평 가 내 용	배점
지원 적합성 및 계획 타당성 (20)	- 본 사업 방향과의 일치성 및 지원의 적합성	10
	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성과	10
기술경쟁력 (20)	- 원천기술의 확보 및 기술의 시장지배력 - 핵심기술에서 제품화까지 기술적 know-how 보유 - 연구개발 조직, 인력보유 등 기술개발 수행 능력 - 대외기관의 공인 기술인증 여부	20
사업성 (20)	- 진입시장의 규모, 수익성, 가격경쟁력 - 기업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- 시장 진입시 초기 성공실현 가능성	20
성장가능성 (20)	- 기업 및 제품의 성장성, 시장 확대 가능성 - 판로확보 및 매출발생 가능성	20
일자리 창출 기여도 (10)	- 고용창출 효과	10
경영능력 및 의지 (10)	- 재무적 건전성(성장성, 안정성, 수익성 등) -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대표자의 기업관 및 의지 - 연구 및 마케팅 전담 조직 및 인력확보 - 사업화 준비 정도(기술개발, 시제품, 양산구축 등)	10

□ 평가 유의사항

※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사업 선정 후 또는 사업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해당기업은 신규평가 감점기준에 의거하여 감점부여

6

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□ 서류 교부처

○ (재)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<https://gama.or.kr>)

□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

○ 접수기간 : 2025. 07. 30(수) ~ 2025. 08. 14(목) 16:00까지

- 접수기간 종료 후 미달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시접수 예정
-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처 :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10로 22, 4층 사업기획팀 정세호 선임
(☎062-960-9532, shjung@gama.or.kr)
 -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원본, 이메일(한글, PDF파일)제출
 - 접수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- 문의처
-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: 정세호 선임(☎062-960-9532)

7

제출서류

□ 제출서류

연번	서 류 명	제출 부수	비고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1	신청서 :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: 서식(제2- 1~제2- 3) (원본 1부 및 전자파일)
2	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1	서식 제3호 (원본 1부)
3	민간부담금(현금) 출자 확약서	1	서식 제4호 원본 1부
4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	서식 제5호 원본 1부
5	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	서식 제6호 원본 1부
6	중복지원금지 확약서	1	서식 제7호 원본 1부
7	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1	서식 제8호 원본 1부
8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1	사본 각 1부
9	재무재표(최근 3년)		'25년 설립된 기업은 예외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1	원본 각 1부
11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(도면, 재료비, 견적서 등)	1	원본 각 1부

*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,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재무제표확인원(국세청 흠택스 재무제표 증명원 인정) 제출